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영호 (통일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함(안 제45조)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며, 같은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여야 함을 규정함. (안 제45조 및 제4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대상자”를 “대상자”로 하고, 단서를 “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만 25세 미만” 부분을 삭제하고, 제2호 중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을 “제2조 각호의 대학”으로 하며, 제3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보호대상자”를 “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u>보호대상자로 한정한다.</u>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 ----- ----- <u>대상자로 한다.</u> 단, <u>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한정한다.</u>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u>만 25세 미만</u> 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1. ----- ----- <u>입학</u>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u>만 35세 미만</u> 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2. ----- <u>제2조 각 호의 대학에 입학</u>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3. <u>(현행과 같음)</u>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	<삭 제>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 려는 <u>보호대상자</u> 는 교육지원 신 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 ----- --- <u>자</u> 는 ----- ----- -----.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정착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5923